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337
----------	---------

제출연월일 : 2001.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보관련 조직의 명칭을 공보+문화 등 참모기능과 집행기능을 복합 수행할 경우 『과』와 『실』 명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며, 수질개선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물 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물 관리 체계 및 조직정비』에 맞게 물 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과의 정원이 한시정원만으로 되어 있어 명칭을 변경하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순서를 총무과 다음으로 함.(안 제3조)

나.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 하수업무 일부를 상하수도과로 재분장 함.(안 제3조)

다.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설치 및 단위사무를 정함(안 제7조 및 제9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문화공보실, 총무과”를 “총무과, 문화공보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2호 “바”목을 삭제하며, 제14호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하고 같은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항 제15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한다.

2. 총무과

- 가. 서무 및 공인관리
- 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후생관리
- 다. 선거 및 국민투표, 여론조사
- 라. 통계 전반에 관한사항
- 마. 통신 및 전산에 관한사항

3. 문화공보과

- 가. 시정업무 홍보관리
- 나. 관광지 및 관광업무 관리
- 다. 문화예술 행사관리
- 라. 국제협력에 관한업무
- 마. 소요산 관리업무
- 바. 하수도시설 종합관리

제7조 제1항중 “시설사업소를”을 “시설사업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로 한다.

제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가. 박물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전·전시

다.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라.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마. 전시품의 고증, 평가, 모사 및 복원

바. 기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시설사업소란 다음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38-1번지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한다.

②동두천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③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수도과장”을 “상하

수도과장”으로 한다.

④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⑤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중 “주민자치과”를 각각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문화공보실”을 각각 “문화공보과”로 “수도과”를 각각 “상하수도과”로,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u>문화공보실</u>, <u>총무과</u>, <u>민간협력과</u>, <u>세무과</u>, <u>회계과</u>, <u>민원봉사과</u>, <u>사회복지과</u>, <u>환경보호과</u>, <u>농림과</u>, <u>지역경제과</u>, <u>건설과</u>, <u>도시과</u>, <u>수도과</u>, <u>주민자치과</u>를 둔다.</p> <p>②(생략)</p> <p>1.(생략)</p> <p>2. <u>문화공보실</u></p> <p>가. <u>시정업무 홍보관리</u></p> <p>나. <u>관광지 및 관광업무관리</u></p> <p>다. <u>문화, 예술행사 관리</u></p> <p>라. <u>국제협력에 관한 업무</u></p> <p>마. <u>소요산 관리업무</u></p> <p>3. <u>총무과</u></p> <p>가. <u>서무 및 공인관리</u></p> <p>나. <u>직제, 정원, 인사, 복무, 후생관리</u></p> <p>다. <u>선거 및 국민투표, 여론관리</u></p> <p>라. <u>통계전반에 관한 사항</u></p> <p>마. <u>통신 및 전산에 관한 사항</u></p> <p>4. ~ 11.(생략)</p> <p>12. <u>건설과</u></p> <p>가. ~ 마.(생략)</p> <p>바. <u>하수도시설 종합관리</u></p> <p>사. (생략)</p> <p>13.(생략)</p> <p>14. <u>수도과</u></p> <p>가. ~ 라.(생략)</p> <p><신설></p> <p>15. <u>주민자치과</u></p> <p>가. ~ 마.(생략)</p> <p>제7조(설치) ①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u>상수도사업소</u>, <u>환경사업소</u>, <u>시설사업소</u>를 둔다.</p> <p>②(생략)</p> <p>제8조(생략)</p> <p>제9조(업무) (생략)</p> <p>1. ~ 3.(생략)</p> <p>4.<신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p> <p>.....<u>총무과</u>, <u>문화공보과</u>, .</p> <p>.....</p> <p>.....<u>상하수도과</u>, <u>주민자치지원단</u>.</p> <p>②(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u>총무과</u></p> <p>가. <u>서무 및 공인관리</u></p> <p>나. <u>직제, 정원, 인사, 복무, 후생관리</u></p> <p>다. <u>선거 및 국민투표, 여론관리</u></p> <p>라. <u>통계전반에 관한 사항</u></p> <p>마. <u>통신 및 전산에 관한 사항</u></p> <p>3. <u>문화공보과</u></p> <p>가. <u>시정업무 홍보관리</u></p> <p>나. <u>관광지 및 관광업무관리</u></p> <p>다. <u>문화, 예술행사 관리</u></p> <p>라. <u>국제협력에 관한 업무</u></p> <p>마. <u>소요산 관리업무</u></p> <p>4. ~ 11.(현행과 같음)</p> <p>12. <u>건설과</u></p> <p>가. ~ 마.(현행과 같음)</p> <p>바. <삭제></p> <p>사. (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14. <u>상하수도과</u></p> <p>가. ~ 라.(현행과 같음)</p> <p>마. <u>하수도시설 종합관리</u></p> <p>15. <u>주민자치지원단</u></p> <p>가. ~ 마.(현행과 같음)</p> <p>제7조(설치) ①.....</p> <p>.....</p> <p>..... <u>시설사업소</u>, <u>자유수호평화박물관</u>을 ..</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현행과 같음)</p> <p>제9조(업무) (현행과 같음)</p> <p>1. ~ 3.(현행과 같음)</p> <p>4. <u>자유수호평화박물관</u></p> <p>가. <u>박물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u></p> <p>나. <u>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전·전시</u></p> <p>다. <u>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u></p> <p>라. <u>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u></p> <p>마. <u>전시품의 고증, 평가, 모사, 및 복원</u></p> <p>바. <u>기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